

조 례

정선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86호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선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담당 과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선군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사용료징수기준(제13조제4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계사용료	렌탈·리스	월당금액×기기사용시간/월평균기기가동시간
	구 매	구매가격÷5년÷12월×기기사용시간/월평균기기가동시간
인 건 비		(6급 10호)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소 모 품 비		실 비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 비·기 타		실 비

비고 : · 월평균 기기가동시간 = 해당기기의 월간 가동시간

· 월평균보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여금조건표의 보수월액 적용

· 인건비 및 전산자료 입력료

－ 일반직 6급 10호봉 기준

· 기계사용료

－ 렌탈(또는 리스)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전 사용할 때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

제 정 이 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5.22.)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급기관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정선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제4조~제8조)
 -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분야별 정보화 추진근거 마련 (제9조~제10조)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 정보화 추진시 국제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정보화 건전성·보편성 보장 (제15조~제16조)
 -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등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추진
 - 정보격차의 해소 근거 마련. 즉,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민, 장애인, 노령자 등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87호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민의날(이하 “군민의날”이라 한다.)의”를 “군민의 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군민의날)”을 “(군민의 날)”으로 하고, 같은 조 중 “10월”을 “6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u>	<u>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u>군민의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u> 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군민의 날</u> ----- ----- -----.
제2조(<u>군민의날</u>) 군민의 날은 매년 <u>10월 1</u> 일로 한다.	제2조(<u>군민의 날</u>) ----- <u>6월</u> ----- -----.

개 정 이 유

- 정선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매년 6월에 개최됨에 따라 이 시기에 맞추어 정선군민의 날을 개정하여 군민편익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에서 6월 1일로 개정(제2조)

정선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88호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주둔부대를 말한다.
2.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의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하며, 또한 전·의경도 포함한다.

제3조(의무) 군은 국가와 사회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증진과 군에 애정을 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외출·외박 등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확대
2. 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4. 군부대 창설 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부대 및 군 장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군부대 장병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정선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 규정(제2조)
-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지원사업 규정(제4조)
-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규정(제7조)
- 포상 규정(제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89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 -----.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 ----- ----- ----- -----.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8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2,500시시 이하	24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한미FTA 발효일에 맞추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의 인하된 세율로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제24조제1호)

현 행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개 정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0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선군이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휴양림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시설사용권 서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표3 서식에 의한 예약 및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일이내(다만, 사용일로부터 3일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2.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불법취사 및 각종 상행위

4.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6. 각종 무속행위

7.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5조 및 제7조 각 항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휴양림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자연휴양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시설사용료 등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야영데크(4×4m)			야영장비			비 고
	성수기 (7~8월)	비 수 기		텐 트 (4~5인용) 침구2조포함	코 펠	버 너	
		주중	주말				
야영장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5,000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성수기는 7. 1부터 8. 31까지로 하며 비수기는 9. 1부터 다음해 6. 30까지로 한다.
3. 비수기 주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금, 토, 일, 공휴일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권 (제3조제1항 관련)

(앞면)

편 철 부 분	<u>○○○사용권 원부</u>	<u>○○○사용권</u>	대 표 적 사 진
	No.	No.	
	○○○○자연휴양림 원 ()	○○○○자연휴양림 원 ()	
	정 선 군 수	정 선 군 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00시~다음날00시)	

2cm 3cm 3cm 10cm

7cm

(뒷면)

<u>시 설 배 치 도</u>	<u>알리는 말씀</u>	편 철 부 분
	- 공중질서를 지킵시다. - 쓰레기를 줄입시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합시다 - 자연을 보호합시다. - 산불을 조심합시다. ☞ 자연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온것! ☜	

8cm 5cm 3cm 2cm

7cm

※ ()안에는 시설사용료의 구분내용 (야영장 번호)

[별표 3]

시설 예약 및 이용대장(제4조제1항 관련)

□ 휴양림명 :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illegible]

[별표 4]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환 불 기 준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3일전 예약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전 예약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 사용일 1일전 예약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 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전 예약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중에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제 정 이 유

-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규정(제3조)
- 휴양림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2조)
 - －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제1항 제6호의8 신설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1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관리휴양지”란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정선군 또는 마을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의 사용대가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장”이란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마을관리휴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폐지 및 구역 변경)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마을관리휴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관리(시설물 관리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마을관리휴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①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청소의무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료는 별표 요금표에 따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선군민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2. 기타 정선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시설이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이용료 요금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령	구 분	이 용 료	
주 차 장		(당일)	(체류)
	이륜차	500	1,000
	승용차	2,000	4,000
	대형차	4,000	8,000
야 영 장	노 지	6,000	
	데 크	10,000	

개 정 이 유

-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마을관리휴양지의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규정(제6조)
 - －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정(‘청소비’를 ‘수수료’로 변경, 이용요금 개선)
- 마을관리휴양지의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제7조)
-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규정(제1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2호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제70조와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강원도지정문화재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등의 지정·해제 계획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관광문화과장과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형문화재 업무담당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전수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참여
5.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시 기•예능의 공개
6. 그 밖에 군수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

제12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① 군수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추천으로 인정 또는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
 ② 동일 종목의 보유자가 복수인 때에는 보유자 과반수의 추천을 얻어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해제)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무형문화재 해제 등을 문화재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그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군수가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제15조(문화축제 행사) ① 무형문화재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문화축제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및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 설치 규정(제3조~제10조)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규정(제11조)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해제 규정(제12조~제13조)
- 보존 및 활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정(제14조~제15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3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u> <u>1. 영업시간 제한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u> <u>2.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u>

개 정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일 0시부터 0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되,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함(제14조의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4호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제5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7.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② 제1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의거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 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하며,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단체는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0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

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제)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반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7조)
 - 안전관리대책개시일(6월1일)전 사전대비계획 수립(4월중),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등에 관한 사항 등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17조)
- 물놀이 안전관리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제21조)
 - 안전관리대책기간(6월1일~8월31일) 내 휴일 비상근무자 편성·운영
 - 대응계획 수립, 현장점검반편성, 상황보고관련사항 등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5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3.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송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4.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5.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6.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35만원
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35만원
3.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10만원
4.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10만원

5.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5만원

6.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 행위: 5만원

제3조(신고자) 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제5조(접수 및 처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이상) 또는 정선군의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상)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상

[illegible]

제 정 이 유

-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신고 및 포상 내용과 금액을 정함(제2조)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35만원
 -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35만원
 -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찜질방,펜션 등): 10만원
 -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10만원
 -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5만원
 -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5만원
- 신고 방법을 정함(제4조)
 -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선군 혹은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을 정함(제6조)
 - 처분청의 처분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4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6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3(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은”을 “도시건축과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어린이”는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④ “성인”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단체 20인 이상은 10% 감면한다.

②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는 50%감면한다.(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③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

명 칭	위 치	시설의 종류
병방산 군립공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굴암리	1. 쥘-와이어 시설 o 쥘-와이어 탑승 및 하강장 o 스카이라운지 o 광장 및 주차장 2. 스카이워크 시설 o 전망시설 o 매표 및 관리소 o 주차장 o 화장실 3. 숙박시설 4. 교통운송시설(곤돌라) 5. 생태관찰 및 탐방로 6. 기타 편의시설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스카이워크 전망대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입장료	5,000원	3,000원	2,000원	(셔틀버스비 포함)

2. 짚와이어 시설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시설사용료	40,000원			스카이워크 전망대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시설종류는 [별표 1] 과 같다.</u>
<신 설>	<u>제2조의3(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 녹색환경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정책과장, <u>지역경제과장은</u>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3. (생략) ④~⑤ (생략)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도시건축과장은</u> ----- ----- -----. 1.~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12조의2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u> ① <u>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u> ② <u>“어린이”는 만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u> ③ <u>“청소년”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u> ④ <u>“성인”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u>
<신 설>	<u>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u> ① <u>단체 20인 이상은 10% 감면한다.</u> ② <u>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는 50%감면한다(단, 주말,공휴일은 제외)</u> ③ <u>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감면한다.</u>

개 정 이 유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의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시설물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 규정(제2조의2)
- 관리사무소 설치 규정(제2조의3)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규정(제12조의2)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제12조의3)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 폐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5. 30.

정선군 조례 제2297호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주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과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기술·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의 시책사업 중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3명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주·귀농여성 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이주·귀농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귀농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귀농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귀농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이주·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여성농업인 시책수립·시행 및 재정·기술·교육 등 지원(제4조)
-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기능·회의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제10조)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제12조)
- 이주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제15조)
- 여성농업인의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제16조, 제17조)